

대한공증인협회 제·개정 회규

제정 회규

위원회운영규칙

2018. 1. 29. 제정 (시행일 2018. 3. 1.)

1 제정 이유

협회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회칙 제35조에 의한 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위원회운영규칙을 제정함.

2 제정 규칙 전문

위원회운영규칙

규칙 제4호
2018. 1. 29. 제정
(시행일 2018. 3.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35조에 의하여 설치할 각종 위원회의 종류, 조직, 권한,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상설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법제교육위원회

2. 국제위원회

③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업무를 분담하게 할 목적으로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조(위원) ① 위원회의 정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 규정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 규칙 또는 규정에서 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지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공증인법 제82조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이 요구된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이 내려지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② 제1항의 징계개시청구에 따라 징계처분이 확정된 위원은 그 위원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협회장은 위원에게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협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위원회의 의사를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밀회의로 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소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는 소관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소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연석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위원회별로 따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록 및 보고)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소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제12조(법제교육위원회) 법제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증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2. 공증인제도 및 공증제도의 개선
3. 공증 관련 법령의 질의 및 해석
4. 공증 관련 판례의 조사 연구
5. 회원 및 공증인 보조자의 연수교육 및 지도
6. 연수교육 과목과 강사 추천 등 연수교육의 기획

제13조(국제위원회) 국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UINL 회원국 활동 및 UINL 회원국 간의 친목 도모
2. UINL 산하 CAAs 회원국 활동 및 CAAs 회원국 간의 친선 교류
3. 공증제도의 법률선진화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개최

부 칙 (2018.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선임되었거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18. 1. 29. 제정 (시행일 2018. 3. 1.)

1 제정 이유

회원 및 공증인보조자의 윤리의식 함양과 전문성 및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회칙 제44조에 따른 공증인연수원의 설치와 운영 및 연수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하고자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2 제정 규칙 전문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제5호
2018. 1. 29. 제정
(시행일 2018. 3.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44조 제3항에 따른 공증인연수원의 설치와 그 운영 및 연수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증인연수원의 설치) ① 협회에 공증인연수원을 설치한다.

② 공증인연수원은 회원(준회원 포함. 이하 같다) 및 공증인보조자의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③ 공증인연수원에는 연수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④ 연수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하는 1인이 되며, 간사는 법제교육위원회 위원 중 원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임명한다.

⑤ 연수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연수교육 수강의무) 회원과 공증인보조자는 최소 3년에 1회씩 연수교육을 받

아야 한다.

제4조(연수교육현황 및 계획 보고) ① 연수원장은 매년 12월 중으로 최근 3년 동안 회원 및 공증인보조자의 연수교육의 이수 현황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매년 12월 중으로 그 다음 해 시행할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교육시기) ①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은 매년 3월 중에 시행한다.

② 공증인보조자에 대한 연수교육은 매년 9월 중에 시행한다.

제6조(연수교육 면제 특례) 네이버 밴드 “대한공증인협회”를 통하여 공증인연수원이 제공하는 회원연수교육 자료를 구독하는 회원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8.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연수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조사위원회규칙

2018. 3. 31. 제정 (시행일 2018. 5. 1.)

1 제정 이유

2015. 7. 1. 시행된 조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는 그 성격이 협회 회칙상 특별위원회로서 2020. 12. 31.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였으나, 협회 개정 회칙(개정 2018. 1. 29., 법무부 인가 2018. 3. 8.)에서는 협회 회칙과 법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공증업무 감독 강화 차원의 협회 상설기구로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개정 회칙 제46조의2)이 마련되었는바, 동 협회 개정 회칙에 따라 상설기구로서 조사위원회 직무와 구성, 조사 사유와 조사 개시 조건, 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회칙 제53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조사위원회규칙을 제정함.

2 제정 규칙 전문

조사위원회규칙

규칙 제 호
2018. 3. 31. 제정
(시행일 2018. 5.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제46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위원회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과 회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공증을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관으로부터 공증인의 직무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증제도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협회장과 상임이사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한 임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위원은 협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사건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조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관계인은 조사에서 그 위원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은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회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사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공증인이 공증인법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기타 그 밖의 회규에 위반한 때
2. 공증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증사건을 유치한다고 인정될 개연성이 있을 때
3. 공증인이 아닌 자에 의해 공증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행위가 이루어진 때
4. 그 밖에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관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 침범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때

제6조(조사 개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사를 개시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관하여 검찰 기타 국가기관 또는 변호사단체 등의 이첩이나 통보가 있는 때
2.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관하여 진정이 있는 때
3.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관하여 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

② 품문이나 사건처리건수 등에 비추어 공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위원회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품문이나 사건처리건수 등에 비추어 공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및 수당) ①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협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위원은 누구나 이 규칙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나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조사기간) 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의 조사기간을 갖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 위원회의 조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조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회원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회원과 사무직원에게 사실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한 위원은 공증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사 사안에 관하여 의견 표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제13조(조사담당 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경우 위원 1인 또는 수인을 조사담당 위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담당 위원은 조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4조(조사서의 작성 방법) 조사서에는 조사일, 조사장소, 조사담당 위원의 성명, 조사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고 조사담당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위원장은 조사담당 위원으로부터 조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협회의 처분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회회의 결정) ① 상임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가 있으면 비위 정도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고발·서면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의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2018.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 설치된 조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임된 조사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사위원회규정(규정 제2호, 2015. 3. 9. 제정) 제3조 제4항 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조사위원의 임기도 이 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4조(조사 사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사 개시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조사 개시된 사건으로 본다.

제5조(규정 폐지) 조사위원회규정(규정 제2호, 2015. 3. 9. 제정)은 폐지한다.

개정 회규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

2018. 1. 29. 일부개정 (시행일 법무부 인가 2018. 3. 8.)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총회 구성원을 대의원에서 회원으로 변경하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한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 15150호, 공포 2017. 12. 12, 시행 2017. 12. 12)에 따라 임원의 구성 및 수에 관한 필요사항과 총회 구성원을 회원으로 변경하고, 임원 선출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회원의 종류 및 가입과 탈퇴, 권리의 의무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특별위원회로서 한시적 기구인 조사위원회를 공증 업무의 감독 강화 차원에서 협회 상설 기구로 재편하고자 회칙에 조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며, 협회 재원 중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연회비로 변경하여 구체화하는 한편, 총회의결 사항에 실적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2 개정(변경) 내용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 ② 정회원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에 의하여 임명받은 임명공증인과 법 제15조의2에 의하여 공증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으로 한다.
- ③ 준회원은 인가공증인이 법 제15조의3에 의하여 구성된 변호사 중에서 공증담당 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공증담당변호사로 한다.
- ④ 임명공증인은 2인 이상이 법 제17조 및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합동사무소 설치를 인가받은 경우에도 각자 정회원이 된다.
- ⑤ 인가공증인은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정회원으로서 인가공증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 ⑥ 준회원은 이 회칙 또는 이 회칙에 따른 규칙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은 당연히 정회원이 되고 정회원의 지위를 얻는 즉시 협회가 정한 소정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법에 의하여 면직된 임명공증인이나 공증인가가 취소된 인가공증인은 당연히 정회원의 지위를 잃고 협회로부터 당연 탈퇴된다.
- ③ 소속 인가공증인으로부터 지정이 철회되거나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공증담당변호사는 준회원의 지위를 잃고 협회로부터 당연 탈퇴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의1 및 제3호의1은 정회원에 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언하고 표결하는”를 “발언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의하는”을 “건의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 회의”를 “협회의”로, “건의하는”를 “건의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1 및 제3호의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협회의 회무에 참여하거나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이익 또는 혜택을 누릴 권리
2. 협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

2의1. 협회의 임원을 선출할 권리

3의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할 권리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협회에 신규로 가입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2. 후보 등록일 현재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하는 자
3. 선거일 현재 법 제83조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 500만 원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법 제86조의4제2항 벌칙을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제2호 중 “명예보전과”를 “명예를 보전하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제1호, 제4항 본문 및 제4항 단서 중 “의장”을 각각 “협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을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입회비 및 회비”를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적대의원”을 “재적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재적대의원 3분의 1”을 “재적구성원 7분의 1”로, “출석대의원”을 “출석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을 “임원”으로, “재적대의원”을 “재적구성원”으로, “출석대의원”을 “출석구성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2조제2호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대의원”을 각각 “구성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① 총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된다.

제17조제1항 중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4장(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회무”를 “업무”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이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3일 전까지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 중 “제14조 및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를 “제14조 및 제16조, 제17조”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종류)”를 “(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5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2. 부협회장 3명 이내

제27조제2항 중 “총회 개최 공고 전까지”를 “선거일 전 25일부터 3일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회장 입후보자 1명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하며, 감사 입후보자가 2명 이내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⑨ 임원 선임에 위한 투표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선거관리위원회) ① 협회장, 감사의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협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협회장 이외의 임원”을 “협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임원이 법 제83조 징계 종류 중 과태료 500만 원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법 제86조의4제2항 벌칙을 받은 경우 당연퇴임한다.

제31조의 제목 “(임원 수당)”을 “(업무 수당)”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감독과 징계)”를 “(감독과 징계사유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이 정하는”을 “회칙과 법이 정하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의결을 청구하는 보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그 회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조사위원회) ① 협회장이 제46조에 따른 징계사유 보고를 위하여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사유의 사실과 증거를 사전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징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제50조제1항 중 “입회비 및 실적회비의 일정비율을”을 “입회비 및 특별회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규정”은 “규칙”으로 한다.

1. 연회비 (정회원)

제51조 중 “협회는 공증인 및 공증인보조자연수교육,”을 “협회는 회관건립, 공증인 및 공증인보조자연수교육,”으로 한다.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호·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회칙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협회장 등 임원 선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중전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총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중전 회칙 제10조제4항 및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회칙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회칙
제6조(회원의 종류) ① 협회의 정회원은 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으로 한다. ② 공증인합동사무소의 임명공증인은 개별적으로 정회원이 된다. ③ 제1항의 인가공증인은 정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 변호사 중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인가공증인의 구성원 변호사 중 공증담	제6조(회원의 종류) ①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에 의하여 임명받은 임명공증인과 법 제15조의2에 의하여 공증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으로 한다. ③ 준회원은 인가공증인이 법 제15조의3에 의하여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공증담당변호사로 한다. ④ 임명공증인은 2인 이상이 법 제17조 및

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협회의 준회원이 되며, 법과 회칙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협회의 회원은 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공증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협회가 정한 소정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공증인 자격이 면직되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협회로부터 당연 탈퇴된다.

③ 준회원은 소속 인가공증인으로부터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이 철회되거나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협회로부터 당연 탈퇴된다.

④ (생략)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 중 표결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에 한한다.

1. 협회의 모든 회무에 참여하고 협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합동사무소 설치를 인가받은 경우에도 각자 정회원이 된다.

⑤ 인가공증인은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정회원으로서 인가공증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⑥ 준회원은 이 회칙 또는 이 회칙에 따른 규칙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은 당연히 정회원이 되고 정회원의 지위를 얻는 즉시 협회가 정한 소정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에 의하여 면직된 임명공증인이나 공증인가가 취소된 인가공증인은 당연히 정회원의 지위를 잃고 협회로부터 당연 탈퇴된다.

③ 소속 인가공증인으로부터 지정이 철회되거나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공증담당변호사는 준회원의 지위를 잃고 협회로부터 당연 탈퇴된다.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회원의 권리)-----
-----, 다만, 제2호의1 및 제3호의1은 정회원에 한정한다.

1. 협회의 회무에 참여하거나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이익 또는 혜택을 누릴 권리

2. 협회의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신 설>

3.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신 설>

4. (생 략)

5.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는 권리

6.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

<신 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생 략)

2. 협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할 의무

3. ~ 7. (생 략)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협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

2의1. 협회의 임원을 선출할 권리

3. -----
----- 발언할 -----

3의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할 권리

4. (현행과 같음)

5. -----
----- 건의할 ----

6. -----
협회의 ----- 이용할 ----

제8조의2(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협회에 신규로 가입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2. 후보 등록일 현재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하는 자

3. 선거일 현재 법 제83조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 500만 원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법 제86조의4 제2항 벌칙을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회원의 의무) -----
-----.

1. (현행과 같음)

2. ----- 명예를 보전하고 -----

3.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회원-----.

③ 대의원은 각 지방검찰청 소속별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이를 선출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정한 각 지방검찰청의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정회원 수 5명마다 1명의 비율로 선출하며, 5명 미만인 경우이거나 5로 나누고 남은 경우에도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⑤ 대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의 정회원 중 후임자를 보선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생략)

제11조(종류 및 소집) ① (생략)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생략)

④ 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종류 및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 협회장-----
---.

③ -----
----- 협회장-----.

1. -----

-- 협회장-----

2. (현행과 같음)

④ ----- 협회장-----

--. --- 협회장-----

-----.

⑤ (생략)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략)
2.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생략)
4.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5. (생략)
6.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안으로 채택된 사항
7.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3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 개정 및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결권 위임) ① 총회 대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협회가 정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은 총회 출석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15조(의장) ① 대의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결사항)-----
-----.

1. (현행과 같음)
2. 임원-----

3. (현행과 같음)
4. ---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 -----
5. (현행과 같음)
6. ----- 정회원 -----

7. ----- 이사회-----

제13조(정족수) ① ----- 재적구성원 -----
-----.

② ----- 재적구성원 7분의 1 -----
----- 출석구성원 -----
-----.

③ -----
임원-----
재적구성원 ----- 출석구성원 -----
-----.

제14조(의결권 위임) ① ----- 구성원-----
----- . 단, 제12조 제2호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② ----- 구성원-----
----- . ---
----- 구성원-----
-----.

제15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된

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
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 이전의 대의
원 임기만료시 새로 소집되는 대의원 총회
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절차는 협회장이
수행한다.

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
와 같다. 다만,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
한 때에는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명 이상의 대의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4장 운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직 협회장 등 원로 7명
을 협회장 또는 협회장 당선자가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운영위원으로 총회에 추천하
여 승인받아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이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17조(의사록) ① -----

----- 구성원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의결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2호는 총회에 최종적으로 부의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의 보궐선출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3. 법 및 회칙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보고에 관한 심의 사항
4. 협회 기구 및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협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0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운영위원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운영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삭 제>

<삭 제>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
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6조, 제17조
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협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
다.

② ~ ③ (생략)

<신 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1. ~ 6. (생략)

<신 설>

7. 기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부의한 사항

<삭 제>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 업무-----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협회장이 소
집한다.

②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
집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이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에는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
지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
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
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
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
-----.

1. ~ 6. (생략)

7. 조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8. -----

<신 설>

제25조(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종류)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생 략)
2. 부협회장 5명 이내(수석 부협회장 1명)
3. (생 략)
4. 이 사 50명 이내
5. 감 사 3명 이내

제27조(선출) ① (생 략)

② 협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 공고 전까지 부협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와 함께 연서하여 총회에 후보등록하여야 한다. 단, 협회장 입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당해 부협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은 실효되며, 부협회장 입후보자가 사퇴하거나 그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협회장 입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부협회장 입후보자를 추가로 등록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임원 입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서 신임을 물을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⑧ 대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은 다

제24조의2(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6조, 제17조

-----.

제26조(구성) -----.

1. (현행과 같음)
2. 부협회장 3명 이내
3. (현행과 같음)
4. ----- 20명 ----
5. ----- 2명 ----

제27조(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거일 전
25일부터 3일간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회장 입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하며, 감사 입후보자가 2명 이내인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

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 설>

⑨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보선) ① (생략)

② 협회장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기) ① ~ ③ (생략)

④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직위를 상실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해임이 부결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직위에 복귀한다.

제31조(임원 수당) ① ~ ② (생략)

제46조(감독과 징계) ① 협회장은 법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회원을 감독한다.

② 협회장은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의결을 청구하는 보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그 회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다.

⑨ 임원 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⑩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선거관리위원회) ① 협회장, 감사의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협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보선) ① (현행과 같음)

② 협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 -----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

제29조(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원이 법 제83조 징계 종류 중 과태료 500만 원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법 제86조의4 제2항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퇴임한다.

제31조(임무 수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감독과 징계사유 보고) ① --- 회칙과 법이 정하는 -----

--.

② -----
-----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조사위원회) ① 협회장이 제46조에 따른 징계사유 보고를 위하여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사유의 사실과 증거를 사

제47조(자원) 협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 6. (생략)

제50조(회관건립기금)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회관 마련에 소요되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회관건립기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재원은 입회비 및 실적회비의 일정비율을 주 수입으로 하고, 협회로부터의 전입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전항에 관한 기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특별회계) 협회는 공증인 및 공증인보조자 연수교육, 공증서류통합보관소 설치·운영,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전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징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자원) -----
-----.

1. 입회비
2. 연회비
3. ~ 6. (현행과 같음)

제50조(회관건립기금) ① -----

----- 입회비 및 특별회비를 -----
-----.

② ----- 규칙-----.

제51조(특별회계) 협회는 회관건립, 공증인 및 공증인보조자 연수교육, -----

-----.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

2018. 10. 13. 일부개정 (시행일 법무부 인가 2018. 12. 4.)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총회 의사록 작성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의사록 작성 기준을 완화하며,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 중에서 지명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변경) 내용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 중 “제14조 및 제16조, 제17조”를 “제14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규정으로 정한다.”를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로 한다.

제3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임이사회의 의사록은 협회장과 협회장이 지명한 구성원 중 1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중 “상임이사”를 “임원”으로 한다.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무국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직무수당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 작성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의사록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업무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 지급된 업무수당은 이 회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회칙
<u><신설></u> 제25조(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업무수당) ① (생략) ② 업무수당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상임이사회의 의사)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u><단서 신설></u> 제36조(위원회의 조직) ① (생략)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u>상임이사</u>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제24조의3(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u>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u> 제25조(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6조 ----- -----. 제31조(업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u>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u> 제34조(상임이사회의 의사) ----- ----- ----. <u>다만, 상임이사회의 의사록은 협회장과 협회장이 지명한 구성원 중 1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u> 제36조(위원회의 조직) ① (생략) ②----- -- <u>임원</u> ----- ----- ----.

③ ~ ④ (생 략) 제38조(사무국장)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③ ~ ④ (생 략) 제38조(사무국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사무국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직무수당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u>
---	---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 1. 29. 일부개정 (시행일 2018. 5. 1.)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협회 재원 중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연회비로 변경하여 표현을 분명히 하며,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던 제반 회비 규정을 각 재원별로 연회비 및 입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의 개별 규정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협회 재정확충을 위하여 연회비 구성을 기본연회비와 직무연회비로 나누면서, 기본연회비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회원에 대하여 부과하고, 직무연회비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공증인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명공증인인 정회원과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준회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회비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체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제반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협회장이 회원의 장부 인증 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비 납부와 관련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변경) 내용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재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회비(회비, 입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를 “회비(입회비,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 및 제5항”은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회비, 입회비, 실적회비”를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로 한다.

① 협회 정회원이 부담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는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입회비) ① 입회비는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공증인가를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회비로서, 분할 납부할 수 없다.

② 입회비는 회칙 제52조에 따른 협회의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적립기금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재입회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납부한 입회비의 2분의1을 감액한다.

③ 입회비는 회칙 제7조에 따른 협회 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연회비) ①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는 회비로서 기본연회비와 직무연회비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에서 그 금액을 정한다.

② 기본연회비는 임명공증인으로서의 정회원과 인가공증인으로서의 정회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부과한다.

③ 공증인 자격 취득이나 공증인 자격 상실로 정회원으로서의 지위가 1년에 달하지 아니할 경우에 기본연회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개월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1. 자격 취득에 따른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의 잔여 개월 수만큼 월할로 계산한 금액

2. 자격 상실에 따른 경우에는 그 해 1월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만큼 연회비를 월할로 계산한 금액

④ 직무연회비는 매년 6월 30일 현재 임명공증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과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준회원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6월 30일로 정년에 해당하는 정회원이나 준회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다.

⑤ 제4항의 준회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직무연회비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를 구성원으로 삼고 있는 정회원이 납부한다.

⑥ 연회비는 매년 7월에 납부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실적회비) ① 실적회비는 협회가 수행하는 증서원부 및 인증부, 확정일자부의 인증에 대하여 장부 인증을 신청하는 정회원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실적회비는 공증인이 공증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증서원부 및 인증부의 인증과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인증을 신청할 때 납부한다.

③ 각 장부별 실적회비는 기입 번호 1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각 1%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협회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장부 조제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한다.

1. 증서원부의 인증에 관한 실적회비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 가액의 최저액
2. 인증부의 인증에 관한 실적회비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가액의 최저액
3. 확정일자부의 인증에 관한 실적회비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 가액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특별회비) 회관건립기금의 적립 등 협회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한시적으로 제1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회비를 결정,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회비 연체가산율 등) ①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후 1개월을 경과한 후 협회에 가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입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가산금액을 입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사이에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5%
2.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사이에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10%
3.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사이에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15%

4.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사이에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20%

5.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5개월을 경과하여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25%

② 회원이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연체가산금을 체납된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1년 미만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5%

2.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1년 이상 2년 미만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10%

3.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15%

4.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3년 이상 4년 미만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20%

5.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4년 이상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25%

제1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7(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 회원이 회칙에서 정한 제반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협회장은 회원의 장부 인증 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중 “회비, 입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회원의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의 연체가산금은 제13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체납하는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부터 적용한다.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규칙
제6조(예산안의 내용) ① (생략) ② 수입은 회비(회비, 입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 기타 수입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분 계상한다. ③ (생략) 제12조(회비 등) ① 협회 정회원이 부담하는 회비, 입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는 총회에서 세입 예산으로 승인된 부담액으로 한다. ② 회비는 1년 단위로 책정하는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회에 신규 입회한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첫해 회비의 경우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의 잔여 개월 수만큼 연회비를 월할 합산하여 납부하며, 임명공증인의 면직 또는 인가공증인의 인가취소 사유로 회원 탈퇴되어 회비 납부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는, 그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하는 당해 연도 1월부터의 개월 수만큼 연회비를 월할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개월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③ 입회비는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후 협회에 입회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회비로서, 분할 납부할 수 없다. ④ 실적회비는 증서 작성, 인증 및 확정일자 처리 건수에 따른 회비로서, 공증인이	제6조(예산안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비(입회비,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회비 등) ① 협회 정회원이 부담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는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공증인법시행령 제20조,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회원이 공증사무소 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증서원부, 인증부, 확정일자부의 기재 전 협회장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때 납부한다.

⑤ 제4항의 실적회비는 증서원부, 인증부 및 확정일자부의 조제비용을 포함하되 협회의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나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각 최저 가액 및 확정일자 수수료를 기준으로 각 가액의 각 1%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특별회비는 협회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써 특별회비를 결정, 부과할 수 있다.

⑦ 협회는 제4항 및 제5항의 납부상황을 회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⑧ 회비, 입회비, 실적회비는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⑦ 협회는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의 납부상황을 회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⑧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는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입회비) ① 입회비는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공증인가를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회비로서, 분할 납부할 수 없다.

② 입회비는 회칙 제52조에 따른 협회의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적립기금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재입회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납부한 입회비의 2분의1을 감액한

<신 설>

<신 설>

다.

③ 입회비는 회칙 제7조에 따른 협회 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연회비) ①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는 회비로서 기본연회비와 직무연회비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에서 그 금액을 정한다.

② 기본연회비는 임명공증인으로서의 정회원과 인가공증인으로서의 정회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부과한다.

③ 공증인 자격 취득이나 공증인 자격 상실로 정회원으로서의 지위가 1년에 달하지 아니할 경우에 기본연회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개월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1. 자격 취득에 따른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의 잔여 개월 수만큼 월할로 계산한 금액

2. 자격 상실에 따른 경우에는 그 해 1월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만큼 연회비를 월할로 계산한 금액

④ 직무연회비는 매년 6월 30일 현재 임명공증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과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준회원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6월 30일로 정년에 해당하는 정회원이나 준회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다.

⑤ 제4항의 준회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직무연회비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를 구성원으로 삼고 있는 정회원이 납부한다.

⑥ 연회비는 매년 7월에 납부한다.

제13조의4(실적회비) ① 실적회비는 협회가 수

<신 설>

<신 설>

행하는 증서원부 및 인증부, 확정일자부의 인증에 대하여 장부 인증을 신청하는 정회원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실적회비는 공증인이 공증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증서원부 및 인증부의 인증과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인증을 신청할 때 납부한다.

③ 각 장부별 실적회비는 가입 번호 1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각 1%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협회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장부 조제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한다.

1. 증서원부의 인증에 관한 실적회비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 가액의 최저액
2. 인증부의 인증에 관한 실적회비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가액의 최저액
3. 확정일자부의 인증에 관한 실적회비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가액

제13조의5(특별회비) 회관건립기금의 적립 등 협회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한시적으로 제1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회비를 결정,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의6(회비 연체가산을 등) ①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후 1개월을 경과한 후 협회에 가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입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가산금액을 입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사이에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5%

2.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사이에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10%

3.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사이에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15%

4.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사이에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20%

5.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5개월을 경과하여 협회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25%

② 회원이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연체가산금을 체납된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1년 미만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5%

2.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1년 이상 2년 미만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10%

3.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15%

4.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3년 이상 4년 미만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20%

<u><신 설></u> 제14조(위임규정) <u>회비, 입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u>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5. <u>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u> <u>도과 후 4년 이상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u> <u>의 25%</u> 제13조의7(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 <u>회원이</u> <u>회칙에서 정한 제반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u> <u>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협회장은 회원의 장</u> <u>부 인증 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14조(위임규정) <u>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u> <u>특별회비</u> ----- -----.
--	---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8. 10. 13. 일부개정 (시행일 2019년도 장부 인증 신청 접수일부터.
단, 제13조의3 제4항 및 제6항은 2019. 1. 1.)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협회 회계 수입과 지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재원 중 연회비의 납부월을 매년 7월에서 매년 1월로 변경하는 한편, 협회 대내외 사업 확장 등에 따른 사업비 및 경상비 지출폭 증가에 따른 재원 증액을 위하여 각 회원의 공증업무처리 건수 실적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실적회비 인상 폭을 합리적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각 장부별 실적회비 상한선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총회가 실적회비 금액을 책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서를 재정규칙의 서식으로 정하는 등 재원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변경) 내용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재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4항 본문 중 “매년 6월 30일”을 “직전년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월 30일”을 “직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각 장부별 실적회비는 기입 번호 1개에 대하여 각 장부 조제에 필요한 비용과 협회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 ④ 각 장부별 인증 신청 시에는 별지 서식을 협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제3항의 각 장

부별 실적회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회장”을 “협회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협회가 지정하는 2019년도 장부의 조제 및 인증 신청을 접수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제13조의3 제4항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후 2018. 12. 31.까지 신청하는 2018년도 장부의 조제 및 인증의 신청은 2015. 3. 9. 일부 개정된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규칙
제13조의3(연회비) ① ~ ③ (생략) ④ 직무연회비는 매년 6월 30일 현재 임명 공증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과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준회원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6월 30일로 정년에 해당하는 정회원이나 준회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다. ⑤ (생략) ⑥ 연회비는 매년 7월에 납부한다. 제13조의4(실적회비) ① ~ ② (생략) ③ 각 장부별 실적회비는 기입 번호 1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각 1%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협회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장부 조제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한다. 1. 증서원부의 인증에 관한 실적회비는	제13조의3(연회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직전년도 12월 31일----- ----- ----- ----- . -, 직전년도 12월 31일----- ----- -----. ⑤ (생략) ⑥ ----- 1월----- . 제13조의4(실적회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장부별 실적회비는 기입 번호 1개에 대하여 각 장부 조제에 필요한 비용과 협회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삭제>

<u>「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 가액의 최저액</u> 2. <u>인증부의 인증에 관한 실적회비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가액의 최저액</u> 3. <u>확정일자부의 인증에 관한 실적회비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가액</u> <u><신 설></u> 제20조(방법) ① 감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와 목적을 <u>회장</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삭 제></u> <u><삭 제></u> <u>④ 각 장부별 인증 신청 시에는 별지 서식을 협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제3항의 각 장부별 실적회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u> 제20조(방법) ① ----- ----- <u>협회장</u>----- ----. ② (현행과 같음)
--	--

4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별지 서식

【별지 서식】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서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서				
신청인	명 칭		대 표	
	주 소	지번 주소	담 당 자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신청회차	20 년도 회차

위 신청인(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은 재정규칙 제13조의4 제4항에 따라 증서원부, 인증부, 확정일자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제 및 인증 등을 신청하면서 각 실적회비를 납부합니다.

장 부	신청 일련번호	장부 신청 권수	1권당 실적회비	금 액
증 서 원 부	~	권	(총회에서 결정된 실적회비)	원
인 증 부	~	권	(총회에서 결정된 실적회비)	원
확정일자부	~	권	(총회에서 결정된 실적회비)	원
실적회비 총액				원

* 주의 : 증서원부, 인증부, 확정일자부의 1권 기준은 장수 25매, 연번 100번 단위입니다. 따라서 권수 표기는 신청 일련번호를 개별 건수로 환산하고 100으로 나누어 기재한 후 실적회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 일련번호가 1001번~1500번일 경우 개별 건수는 500건이며, 신청 장부 권수는 개별 건수를 100으로 나눈 5권이 되므로, 실제 납부할 실적회비는 '1권당 실적회비'×'5권'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 . . .
(인)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귀하

접수일자		접수번호		인증일자	
발송일자		담당자 확인		등기(택배)번호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13-880293 예금주 대한공증인협회
 접수 : 팩스 02-3476-5551 대한공증인협회 사무국

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 10. 13. 일부개정 (시행일 2018. 11. 1.)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 운영을 위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의사록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서명 날인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규정으로 개정하는 한편, 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변경) 내용

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의결권 위임) ① 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회가 정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 출석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준용규정) 제7조의2 규정은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자문위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서명 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문위원이 위원회로부터 특정한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문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부 칙 (신설)

이 규칙은 2018. 11. 1.부터 시행한다.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규칙
<신설>	제7조의2(의결권 위임) ① 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회가 정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 출석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신설>	제8조의2(준용규정) 제7조의2 규정은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제8조의3(자문위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및 보고)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② (생략)	제10조(의사록 및 보고) ① ----- ----- ---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② (생략)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 ② (생략). <신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 ② (생략). ③ 자문위원이 위원회로부터 특정한 업무에

	<u>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문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u>
--	--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 10. 13. 일부개정 (시행일 2018. 11. 1.)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공증인연수원장 선임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상임이사가 아닌 회원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변경) 내용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상임이사”를 “회원”으로 한다.

부 칙 (신설)

이 규칙은 2018. 11. 1.부터 시행한다.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규칙
제2조(공증인연수원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연수원장은 <u>상임이사</u>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하는 1인이 되며, 간사는 법제교육위원회 위원 중 원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임명한다. ⑤ (생략)	제2조(공증인연수원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 <u>회원</u> ----- ----- ----- -----. ⑤ (생략)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018. 9. 14. 일부개정 (시행일 2019년도 장부 인증 신청 접수일부터)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재정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법무부가 시행중인 전자접수부의 본격적인 회원사무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장부 중 접수부의 조제 및 제공을 폐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변경) 내용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규칙 제13조 제4항”을 “재정규칙 제13조의4”로 한다.

제2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 본문 중 “접수부를 제외한 장부의 인증은”을 “장부의 인증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별지 서식 1”을 “재정규칙 별지 서식.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수수료”를 “실적회비”로 한다

제6조 중 “장부의 조제 및 인증 신청서”를 “신청서”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장부의 조제 및 인증 신청서”를 “신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규칙 제13조 제4항 및 5항”을 “재정규칙 제13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장부별 실적회비는 기입 번호 1개에 대하여 각 장부 조제에 필요한 비용과 협회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실적회비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내지 25매, 연번 100번 단위 장부 1권

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실적회비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 1.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서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 2. 접수대장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3. 납입 확인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가 지정하는 2019년도 장부의 조제 및 인증 신청을 접수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후 2018. 12. 31.까지 신청하는 2018년도 장부의 조제 및 인증의 신청은 이 규정 시행 전 별지 서식 1.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서와 별표 2. 실적회비 규정을 적용한다.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회칙 제47조 및 재정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공증인법 시행령 제20조,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등에 의거하여 협회 정회원(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 이하 ‘회원’이라 함)이 사무소 내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되는 증서원부, 인증부, 확정일자부 및 접수부(이하 ‘장부’라 통칭함)에 대하여 협회장에게 조제 및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회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실적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부 조제 및 매수) 장부는 공증서식의	제1조(목적) ----- <u>재정규칙 제13조의4</u> ----- ----- ----- ----- ----- ----- ----- ----- ----- ----- -----. 제2조(장부 조제 및 매수) -----

요청을 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수령확인이 가능한 택배사 등을 이용하여 신청회원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송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 회원이 착불 형태로 부담한다.

제8조(실적회비) ① 장부의 조제 및 인증 신청 시에 납부하는 실적회비는 협회 회칙 제47조 및 재정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내지 25매, 연번 100번 단위 장부 1권을 기준으로 조제 및 인증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실적회비는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신 설>

-----, -----
-----.

제8조(실적회비) ① -----

----- 재정규칙 제13조의4 -----
-----.

② 각 장부별 실적회비는 기입 번호 1개에 대하여 각 장부 조제에 필요한 비용과 협회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실적회비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내지 25매, 연번 100번 단위 장부 1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별지 서식

별지 서식 2. 접수대장

〔 20 년도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 접수대장 〕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신청 회차	각 장부별 조제 및 인증 신청 일련번호 및 실적회비									실적회비 합 계	인증 일자	발송 일자	비고
				증서원부			인증부			확정일자부						
				연번	권수	실적 회비	연번	권수	실적 회비	연번	권수	실적 회비				

별지 서식 3. 납입 확인증

No. _____

장부 조제 및 인증 실적회비 납입 확인증				
신 청 인				
입 금 액	금	원정		
☐ 사용 연도별 신청 회차 : 20 년도 회차				
☐ 세부 내역				
공 증 부 책	일련번호	권수	1권당 실적회비	실적회비 총 금액
증 서 원 부	~	권	원	원
인 증 부	~	권	원	원
확정일자부	~	권	원	원
실적회비 총액				원
위 금액을 귀 회원의 장부 조제 및 인증에 따른 실적회비로서 정히 영수함 20 . . .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사무국장

(내부용)

담 당 자